



규정

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

문서번호	TWP-D102
제정일자	1998. 03. 01.
개정일자	2012. 06. 04.
개정번호	2
페이지	1/5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과 인사
- 제3장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
부칙

작성부서	산학협력단	제정일자	1998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						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규정
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

문서번호	TWP-D102	
제정일자	1998. 03. 01.	
개정일자	2012. 06. 04.	
개정번호	2	페이지 2/5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- 2차 개정
2	2012. 06. 04	- 형식 변경에 따른 전문개정 -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2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의 산업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2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재정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교내·외의 제반 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
3. 외부기관 및 산업체의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
4. 산업기술 관련 연구에 관한 학술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
5. 국내·외 연구기관과의 기술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, 보급에 관한 사항
6. 관련 연구의 활동지원 및 연구소 논문집 발행에 관한 사항
7. 관련 학술활동 지원과 연구업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2장 조직과 인사

제3조 (조직과 업무분장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분과를 둔다.


1. 전자정보연구 분과 : 전자정보산업과 관련한 전자·반도체, 컴퓨터, 자동제어, 통신 그 밖에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
2. 건설산업연구 분과 : 건설산업과 관련한 건축설계, 건설안전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시공 등 그 밖에 건설산업분야에 관한 사항
3. 영리 및 비영리 기업경영연구 분과 : 경영·경제와 관련한 기업의 진단 및 경영지도, 경영컨설팅, 시장조사 등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4조 (인적 구성)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각 연구분과별 책임자를 두고 약간의 연구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5조 (위촉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전임교원 이외의 위촉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을 기간제로 위촉할 수 있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
		개정번호	2

② 연구소는 연구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산업체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과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연구원 또는 그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6조 (사무직원) 연구소의 행정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7조 (산업기술연구소 산하 연구소설립)

- ① 산업기술연구소 연구분과별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- ② 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제3장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

제8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심의와 총장자문을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분과별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위촉 위원은 교내·외 인사 중 관련 전공 및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,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(안) 상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과제의 선정과 수주활동에 관한 사항
4. 관련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심사, 편집, 출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 및 연구소장의 부의에 관한 사항

⑤ 운영위원회의 개최와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4]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D102	
		제정일자	1998. 03. 01.	
	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2. 06. 04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